전자서명 동의서

			-							
상품명	New종합건강보	험 일당백		계약자	이용석					
E-mail	lyslhj@hanmai	l.net		핸드폰	010-4	901-7168				
■ 전자서명	영에 의한 보험계	약 체결 동의시	4							
본인은 대	다음과 같이 전자서!	명을 통해 보험계약	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전자시	서명방식에 의해 보험	험계약을 청약합니	- 다 음 - 필요한 사항(보험청약서, 계약 I다. 보험계약체결의 모든 과정 험계약을 체결합니다.						2조 제2호의	
- 전자문 - 전자서 - 계약자	명을 통한 보험계약 🤊	기용하여 청약서를 체결 후 삼성생명 홈 설명서 및 약관의 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www.samsunglife.co 너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 립니다.							니다.
■ 계약지 보험청	l료 교부방식의 전자? 약서, 보험약관, 상품	덕 방법수령에 동의 설명서 등 보험계약	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함	결 시 전자문서 에 동의합니다	작성 및 -	관리기준'에 따리	나 전자서명	영을 통해 직	성된	
			전자적 방법 수령에 등	동의합니다.		예 🕟	/	아니오		
	2021 년	12 월	02 일	계약자	성명	카카오	인증	서명 🦻	가카오	인증
-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u></u>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위해 보험금 지급내용 안내서비				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의 민감정보	(질병/상해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진 트 소유의 전자기기를 통해 제공	행하고자 합니	l다.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 <u>조</u> 회 · (L집중기관에서 수접	험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십 · 관리하는 정보(보험금 지급		l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	보)			
			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시는 리 처리동의서에 따른 조회는 별			이용하실 수 없	(습니다.			
주피보험자	상기 민감정보 수 상기 개인정보 수	0 0 .	♥ 안심	등의함 등의함	성명			서명		
	상기 민감정보 수		♥ 안심	동의함						
종피보험자	상기 개인정보 수		♥ 안심 □ 동의하지 않음	등의함	성명			서명		
 서명불리	l오기 활용 서류	- 및 고객확인								
-	구 분			서명불러	오기 활용	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종	피보험자									
계약자	서명불러오	2기 활용을 동의협	나다. 서류확인	ద	l명 -			서명		
주피보험자	서명불러오	2기 활용을 동의협	나다. 서류확인	<u></u> 성	명			서명		
종피보험자	서명불러오	2기 활용을 동의협	:니다. 서류확인	성	명			서명		
	계 약 자 <i>7</i> 주피보험자	예약자는 2021년	12월 02일 12:08:14에 카키	·오인증으로 연	인증 하셨 ·	습니다.				
	종피보험자									
	예 금 주 친 권 자									
	전 년 자 친 권 자									

[CISO 심의필 2021-028] 삼성생명 SAMSUNG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2종(유해지환급금형)

체결용



이용석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컨설턴트 신현자 생애재무설계 우수컨설턴트

연락처 010-2285-8673

지점명 신안성지점

















상기 아이콘 특성정보는 상품특성을 도식화하기 위해 변동가능한 가정이 사용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설명서는 <mark>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mark>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비랍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021-12-02 10:26 AM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준법감시필 제2021-1811(건강상품P, 2021.09.16~2022.09.15)]

SAMSUNG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의 상품이 아닙니다.
- **순수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달리,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습니다.

구분	저축성보험	순수보장성 보험
해지환 급금	*	적거나 없음
위험보험료/ 사업비 차감액	小	*
특징	'저축기능' 강화	'위험보장' 중점

- 이 보험상품은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mark>실손의료보험</mark>이 아닙니다**.

구분	실손의료보험	정액형 질병보험
보장내용	입·통원에 따른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중 보장대상 의료비 (단,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제외)	진단・입원・수술 등 보장대상 보험사고별 정액보험금

민원 · 분쟁 · 상담이 많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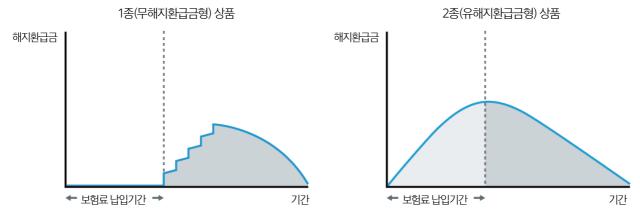
유형1	갱신형특약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함
내용	C고객은 가입당시 컨설턴트 B에게 특약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안내 받지 못했고 특히,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까지 납입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며 불만제기. 컨설턴트 확인결과 상품권유시 이미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라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 C고객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험료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종료시점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함.
유의사항	갱신형 특약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으며, 주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갱신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 가입시 필수 안내사항으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갱신보험료와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전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어 관련 내용에 대해 꼭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주의※

주의 ■ 무해지환급형 상품 유의사항

이 보험의 1종(무해지환급금형)은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계약해당일 이후 해지환급금이 2종(유해지환급금형) 대비 적습니다.

1종(무해지환급금형)은 2종(유해지환급금형) 상품보다 보험료는 낮은 반면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기비	보험료(월)	해지환급금				
구분	도임표(절)	5년	10년	20년		
2종(유해지환금금형)	69,600 원	2,440,750 원	5,365,200 원	10,393,500 원		
1종(무해지환급금형)	58,500 원	-	-	1,039,350 원		

[※] 위 예시액은 중도해지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화급금이 더 적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한 단순 예시(40세 남자. 표준체, 가입금액 3,000만워, 80세만기, 20년납 기준)이며, 해당 상품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계약소멸 급부에 관한 유의사항

이 상품에는 보험금 지급 횟수가 제한된 소멸성 담보가 있습니다.

- 예시 : 암진단보험금을 한번 지급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다시 진단받더라도 추가로 암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예시 외에도 소멸성 담보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설명서 계약 소멸사유에 관한 사항

주의 ■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이 상품에는 가입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 ※ 감액 지급 담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유방암","자궁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시(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에 한함), 암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상기 예시 외에도 감액이 있는 담보가 있으므로 상품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면책기간에 관한 유의사항

이 상품에는 가입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담보가 있습니다.



- ※ 면책기간 적용 담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적용담보: 암진단보험금
- 상기 담보 외에도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가 있으므로 상품설명서 본문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경제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 예금자 보호에 관한 유의사항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등 기타지급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1인당 최고 5천만원)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mark>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mark>.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외사항은 아래 설명서 안내 참조

·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예금자 보호 안내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민원 · 상담 · 분쟁조정 연락처

구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콜센터 ☎ 02-2262-6565		国 (2000年1200年1200年1200年1200年1200年1200年1200			
상담•민원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insure.or.kr/ counselCase/qna/list.do				
		7071501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분쟁조정	삼성생명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금융감독원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自然医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비랍니다.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아이콘	내용	설명
에금자보호 에급보험장사 보호금융상품 1인연 최고 5천만원	예금자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유형	본 상품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리확정형 적용금리 고정	금리확정형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입니다. 아이콘의 적용이율은 주보험 기준으로 예시하였으며, 특약의 적용이 율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기간 _{청약후} 30일 이내	청약철회기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격지수 낮을수록 저렴 102.5% 보험사평균=100%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는 해당상품 주보험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가격지수가 100%를 초과하면 업계 평균보다 가격 수준이 높고, 100% 미만이면 업계 평균보다 가격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해지환급률 작용이율 기준 3년: 49.5% 5년: 61.7% 7년: 67.0% 납입보험료 기준	해지환급률	해당 아이콘의 예시된 해지환급률은 경과기간별(3,5,7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특약 해지환급금 포함)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암책임개시 일부답보에 한함 90일 이후	책임개시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 감액지급 일부담보에 한함 50% 1년 이내	감액지급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 「"유방암", "자궁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암진단보험 금 지급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 상기 표의 아이콘 및 설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해당 안내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치료비 부담이 높고 소득 상실 가능성이 큰 3대 질병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암진단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암"의 진단금액과 동일한 진단금액을 지급합니다.(주보험 기준)

- ※"암"이라 함은 주보험 약관 별표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1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등 소액질병 보장금액은 주보험에서 보장하는 "암"의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가능합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단,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등 소액질병은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며, 기존 가입한 보험 등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암" *유방/자궁/전립선암 포함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관련 주보험/특약	주보험/암진단특약	소액질병보장특약

- ※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진단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소액질병: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뇌혈관 관련진단

뇌출혈, 급성뇌경색증 II , 뇌졸중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보장합니다.(해당 선택특약 가입시)

	뇌혈관질환(l60~l69)					
구분 (분류번호 및 질병정의)	① 뇌출혈 (160~162) ② 급성 뇌경색증 II (163,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		③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3, 165~166)	④기타 뇌혈관질환 (164, 167~169)		
관련 주보험/특약	주보험/뇌출혈진단특약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	-	-		
		-				
		뇌혈관질	환진단특약			

시혈관 관련지단

급성심근경색증, 특정허혈심장질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허혈심장질환" 진단을 보장합니다.(해당 선택특약 가입시)

	허혈심장질환(I20∼I25)						
구분 (분류번호)	①급성심근경색증 (I21~I23)	/) (무연절연실을 /)		④기타 허혈심장질환 (120, 124, 125)			
관련주보험/특약	주보험/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	-			
		-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						

만성 질환, 중증 질환 등 다양한 질병 보장이 가능합니다.(해당선택특약가입시)

- 당뇨병, 만성 간 • 폐 • 신장질화(중등도이상), 6대 난치성질병, 크로병,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 등을 해당 선택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 보장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회사가정한 가입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고객의 니즈에 맞게 비갱신형과 갱신형 선택특약을 자유롭게 설계 가능합니다.(만, 일부특약제외)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010-2285-8673)



건강상태가 양호한 고객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한 고객 중에서 20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아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및 사망 보장」에 대해 표준체 대비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려면 비흡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 ※ 고지우랑체 기준: ①최근 1년 이상 비흡연자 ②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수치(kg/m²) 가 20.0 이상이고 25.0 미만인 자

건강보험에 특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최초가입후 15년 이내 보험금 수령시 5년간 서비스 제공)

-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3대질병진단케어서비스,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진단시 당뇨케어서비스 [단, 당뇨케어서비스는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특약 가입자에 한함]
- ※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기본정보]

보험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컨설턴트	평택지역단 신안성지점
(보험설계사)	신현자 (010-2285-8673, 보험설계사 고유번호: 19891258100005)
상품명	삼성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2종(유해지환급금형) [제3보험]
보험계약자	이용석 42 세 남 납입주기 월납
피보험자	이용석 42 세 남 상령일 2022년 3월 24일
보험기간	(주보험 기준) 2021-12-02 부터 2069-12-01 까지
합계보험료	89,930원

- ※ 상기 보험기간은 상품설명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보험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수익자, 특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등은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령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는 날이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6개월 차이나는 시점에 보험나이가 변경됩니다.
- ※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상기 컨설턴트에 대한 주요정보는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적용보험료	표준체 가입시	고지우량체 가입시	슈퍼우량체 가입시
주보험[2종(유해지환급금형)]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31,600원	31,600원	27,700원	21,300원
소액질병보장특약 V D(무배당) 2종(유해지 환급금형)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5,270원	5,270원	4,800원	4,350원
뇌혈관질환진단특약D(무배당) 2종(유해지 환급금형)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26,660원	26,660원	26,390원	26,200원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무배당) 2종(유해 지환급금형)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24,200원	24,200원	24,100원	23,900원
암직접치료통원특약D(무배당) 2종(유해지 환급금형)	2,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2,200원	2,200원	2,180원	2,160원
합· 합·	89,930원	89,930원	85,170원	77,910원			

- ※ 합계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의 보험료로서 향후 납입보험료는 갱신형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변동됩니다.
- ※ 고지우량체보험료/슈퍼우량체보험료는 표준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고지우량체/슈퍼우량체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증체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 ※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을 특정나이(100세,90세,80세 등)까지로 선택하신 경우,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은 해당 보험나이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보험에 대한 피보험자 건강체는 **표준체** 입니다.
- ※ 아래 특약 가입시 할증체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급성뇌경색증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II , 두번째 뇌출혈진단특약, 뇌졸중진단특약, 뇌혈관질환진단특약, 뇌혈관질환입원특약, 일과성뇌허혈발작진단특약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II ,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특정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 II ,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 허혈심장질환입원특약, 심방세동및조동진단특약
- · 뇌심질환수술보장특약, 급여뇌심특정재활치료특약,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특약
- 신입원특약, 중환자실입원특약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8/35





[특약 가입 개요]

구분	기본계약	가입(예정)특약
대상 계약(개수)	2	3
보험료(원)	36,870	53,060

- ※ 본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정부가특약은 기본계약에 포함됩니다.
- ※ 보험계약(기본계약 + 특약)의 각 특약은 가입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제안 받거나 선택한 특약은 3개(제도성특약 제외)이며, 다수 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보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컨설턴트 등에게 특약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귀하의 다른 보험계약, 가입 필요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 필요가 없는 특약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특약과 같이 모든 세부보장을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1개 특약으로 계산합니다.
 - 만성간ㆍ폐ㆍ신장질환(중등도이상)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중대질병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남성특정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여성특정수술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

[보험료 할인 관련 안내]

■ 보험료 선납 할인에 관한 안내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 체결시점(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납입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최대 6개월분(당월분 제외)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 우량체 할인에 관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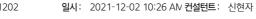
- 표준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한 경우(고지우랑체/슈퍼우랑체로 판정받은 경우)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슈퍼우량체 가입시 할인효과 및 총 할인금액

적용보험료	슈퍼우량체 가입시	할인효과	총할인금액
89,930원	77,910원	12,020원	2 994 90091
09,930편	/ /,910권	(13.3%)	2,884,800원

- ※ '슈퍼우량체'란 슈퍼우량체할인특약(무배당)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량체를 말합니다.
- ※ 적용보험료는 주보험 및 가입하신 특약별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적용한 보험료입니다.
- ※ 할인효과는 적용보험료와 슈퍼우량체 가입시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할증체로 가입한 주보험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증체와 표준체보험료의 차이도 할인효과에 포함됩니다.
- ※ 총 할인금액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납입총액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다만, 갱신형특약의 경우는 최초계약 갱신 전까지 납입기간 동안의 보험료납입총액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010-2285-8673)





주요 진단 및 입원/수술 보장내용 요약

구분		지급금액	비고	
	암 진단시 (<mark>최</mark> 초 1회한)			
암진단	+당뇨병 발생 전 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	+	"암"의 정의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암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 발생 후 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	+	및 "대장점막내암"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암추가보장 (최초 1회한) (유방암,자궁암, 전립선암 제외)	+		
갑상선암 진단	갑상선암 진단시 (최초 1회 <u>한</u>)	1,000만원		
	뇌출혈 (최초 1회한)	1,000만원		
	+당뇨병 발생 전 뇌출혈 진단시	+	"뇌혈관질환" 의 정의에는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졸중"의 정의에는 "뇌출혈", "급성뇌경색증 II "가	
뇌혈관 관련	+당뇨병 발생 후 뇌출혈 진단시	+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의는 약관 참조) 따라서, "뇌출혈" 또는 "급성뇌경색증 II "로 진단시 "뇌졸중" 및	
진단	급성뇌경색증॥ (최초 1회한)		"뇌혈관질환"의 진단보험금 또한 추가로 지급됩니다.	
	뇌 <u>졸중 (최초 1회한</u>)		(단, 최초 1회에 한하며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뇌혈관질환 (최초 1회 <u>한</u>)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최초 1회한)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의 정의에는 "특정 허혈심장질환"이 포함되어	
	+ 당뇨병 발생 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 있으며, "특정 허혈심장질환"의 정의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의는 약관	
심혈관 관련 진단	+ 당뇨병 발생 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참조)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특정 허혈심장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진단보험금 또한 추가로	
	특정 허혈심장질환 (최초 1회한)		지급됩니다.	
	허혈심장질환 (최초 1회한)	1,000만원	· (단, 최초 1회에 한하며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뇨병 진단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 (최초 1회한)			
(당뇨병보장 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 (최초 1회한)			
	질병,재해 입원	1일당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	1일당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급전	뇌혈관질환 입원	1일당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허혈심장질환 입원		4일이상 계속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신수술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됨	
신수술॥		~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또는 「1회의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 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됨	
수술	수술 질병·재해수술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됨	
	암수술	관혈 비관혈	관혈수술의 경우 횟수제한이 없으며 비관혈수술의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됨	
	뇌심질환 수술	관혈 비관혈	관혈수술의 경우 횟수제한이 없으며 비관혈수술의 경우 "뇌질환" 및 "심질환" 각각의 질병(2가지)당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됨	

^{※ &#}x27;당뇨병 발생 후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당뇨후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이후 당뇨병으로 진단 후 각 질병 진단시에만 지급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비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삼성 보장내용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 ※ '유방암 진단', '자궁암 진단', '전립선암 진단', '갑상선암 진단', '뇌혈관 관련 진단(뇌출혈 제외)', '심혈관 관련 진단(급성심근경색증 제외)', '당뇨병 발생 전/발생 후,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에서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해당지급금액의 40%를 지급합니다.
- ※ 상기 표에서 '비관혈수술'이란 약관에서 정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의미합니다.
- ※ 상기 예시된 내용은 주보험 및 일부 특약에 대해 요약한 것으로, 이 외 보장내용, 질병 정의 및 보장개시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내용'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주보험 및 특약 관련 알아두실 사항]

- ※ 각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주보험 및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보험 및 특약의 보장은 주보험 및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주보험 보장내용 : 2종(유해지환급금형)]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유
암진단보험금	1,000만원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뇌출혈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1,000만원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 계약일부터 1년이내 「유방암, 지궁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암"이라 함은 주보험 약관 별표(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암"보장에 관한 세부내용은 [암 보장에 관한 유의사항]과 해당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보장내용]

소액질병보장특약 V D(무배당)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유
소액질병진단보험금	1,000만원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시(각 1회한)

[※]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뇌혈관질화진단특약D(무배당)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유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1,000만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보장내용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무배당)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유
허혈심장질환진단보험금	1,000만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D(무배당)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유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	1회당 4만원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시 또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 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시 (1회당)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비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보험료 납입면제 및 계약소멸사유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주보험

- 주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시 차회 이후 주보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 피보험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특약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회 이후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 (갱신형특약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 면제)
- 일부 특약은 공통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외에도 특약별 납입면제사유가 별도로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소멸사유에 관한 사항]

■ 주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단, 재해사망특약 II (무배당)은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단, 정기특약(무배당) 제외]
- ※ 특약별 계약소멸사유는 해당 특약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13/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사항

[3대질병진단케어서비스]

■ 서비스 이용 조건

주보험을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서비스 내용

주보험 계약일부터 15년 이내에 주보험에서 암진단보험금, 뇌출혈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각 질병당 1회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소액질병보장특약 V D(무배당), 소액질병보장특약VIN15(갱신형,무배당), 특정소액질병보장특약D(무배당) 또는 특정소액질병보장특약N15(갱신형,무배당)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주요 내용

- 전국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동행서비스 제공
- 질화관리서비스
- 일반건강관리서비스(건강상담, 고객지정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등)

■ 기타사항

- 3대질병진단케어서비스는 S-헬스케어콜센터(1670-0134) 또는 S-헬스케어홈페이지(http://s.changhealthcare.co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대질병진단케어서비스는 삼성생명의 제휴업체인 ㈜창헬스케어에서 제공합니다.
- 3대질병진단케어서비스 내용은 향후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제휴회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변경 내용 또는 중지 사유에 대하여 안내장 또는 모바일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3대질병진단케어 서비스안내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케어서비스]

■ 서비스 이용 조건

- 당뇨케어서비스는 아래의 특약을 정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특약D(무배당)
 -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특약N15(갱신형,무배당), 최초계약에 한함

■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서비스 내용

- 최초 계약일부터 15년 이내에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단, 서비스 신청은 최초 1회에 한함)
- 서비스주요내용
 - · 일반건강관리서비스(건강상담, 고객지정 병원 진료 예약 대행 등)
 - ・당뇨 자기주도 건강관리 P/G 지원
 - · 건강코칭서비스(걷기 어플리케이션 제공)
 - 근골격계 질환 자가관리 P/G 지원

■ 기타사항

- 당뇨케어서비스는 S-헬스케어콜센터(1670-0134) 또는 S-헬스케어홈페이지(http:// s.changhealthcare.co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뇨케어서비스는 삼성생명의 제휴업체인 ㈜창헬스케어에서 제공합니다.
- 당뇨케어서비스 내용은 향후 제공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제휴회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변경 내용 또는 중지 사유에 대하여 안내장 또는 모바일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3대질병진단케어 서비스안내장 내 당뇨케어서비스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해지환급금 안내

[해지환급금 예시표(주보험 해지환급금)]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 누계(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42세	94,800	0	0.0
6개월	42세	189,600	0	0.0
9개월	42세	284,400	0	0.0
1년	43세	379,200	0	0.0
2년	44세	758,400	242,620	31.9
3년	45세	1,137,600	545,740	47.9
4년	46세	1,516,800	850,850	56.0
5년	47세	1,896,000	1,157,670	61.0
6년	48세	2,275,200	1,465,780	64.4
7년	49세	2,654,400	1,774,800	66.8
8년	50세	3,033,600	2,032,800	67.0
9년	51세	3,412,800	2,291,200	67.1
10년	52세	3,792,000	2,549,700	67.2
15년	57세	5,688,000	3,839,500	67.5
19년	61세	7,204,800	4,849,700	67.3
20년	62세	7,584,000	5,095,800	67.1
21년	63세	7,584,000	5,080,200	66.9
22년	64세	7,584,000	5,057,200	66.6
23년	65세	7,584,000	5,026,500	66.2
24년	66세	7,584,000	4,987,800	65.7
25년	67세	7,584,000	4,940,300	65.1
30년	72세	7,584,000	4,526,400	59.6
35년	77세	7,584,000	3,764,900	49.6
40년	82세	7,584,000	2,639,200	34.7
45년	87세	7,584,000	1,114,400	14.6
48년	90세	7,584,000	0	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에는 특약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주보험+특약의 해지환급금)]

경과년도	보험나이	납입보험료 누계(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개월	42세	269,790	14,850	5.5
6개월	42세	539,580	29,710	5.5
9개월	42세	809,370	44,560	5.5
1년	43세	1,079,160	59,550	5.5
2년	44세	2,158,320	745,090	34.5
3년	45세	3,237,480	1,603,650	49.5
4년	46세	4,316,640	2,466,260	57.1
5년	47세	5,395,800	3,332,090	61.7
6년	48세	6,474,960	4,199,780	64.8
7년	49세	7,554,120	5,068,040	67.0
8년	50세	8,633,280	5,793,600	67.1
9년	51세	9,712,440	6,518,040	67.1
10년	52세	10,791,600	7,240,310	67.0
15년	57세	16,187,400	10,797,070	66.7
19년	61세	20,504,040	13,516,930	65.9
20년	62세	21,583,200	14,169,840	65.6
21년	63세	21,583,200	14,097,380	65.3
22년	64세	21,583,200	14,001,370	64.8
23년	65세	21,583,200	13,881,080	64.3
24년	66세	21,583,200	13,735,820	63.6
25년	67세	21,583,200	13,564,070	62.8
30년	72세	21,583,200	12,226,820	56.6
35년	77세	21,583,200	10,022,350	46.4
40년	82세	21,583,200	6,943,630	32.1
45년	87세	21,583,200	2,926,550	13.5
48년	90세	21,583,200	0	0.0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에는 특약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갱신형특약의 경우 「주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갱신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는 갱신형특약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최초가입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이며, 갱신형특약의 기초율 변경 또는 갱신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성특약

특별조건부특약	피보험자 진단 결과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금 감액 등의 방법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약을 부가하여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표준체 상태가 된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표준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약의 면책기간 중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대신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탑승부담보특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하는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함)에 한하여 부가됩니다.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중「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고지우량체할인특약 (무배당)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체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아래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고지우량체 기준 : ① 최근 1년이상 비흡연자 ②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수치(kg/m')가 20.0 이상이고 25.0 미만인 자 - 고지우량체 신청방법 : 계약자께서 ①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 ②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③ 담당 컨설턴트 접수로 우량체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체에서 고지우량체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승낙 후 고지우량체보험료를 납입하며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계산된 금액(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정산차액은 기납입보험료 기준이 아닌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보험료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료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거나일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표준체 보험료" 보다 적은 "고지우량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과 관계없이 "고지우량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고지우량체할인특약(무배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병력, 보험금 지급 이력(건강상태) 등으로 고지우량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슈퍼우량체할인특약 (무배당)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체에 해당하는 2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아래의 회사가 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할인된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슈퍼우량체 기준: ① 최근 1년이상 비흡연자 ② BMI(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수치(kg/m')가 20.0 이상이고 25.0 미만인 자 ③ 수축기혈압 120mmHg미만, 이완기혈압 80mmHg미만인 자 ④ 공복혈당수치 100mg/dL 미만인 자 - 슈퍼우량체 신청방법: 계약자께서 ①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 ②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③ 담당 컨설턴트 접수로 우량체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체, 고지우량체에서 슈퍼우량체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승낙 후 슈퍼우량체보험료를 납입하며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정산합니다. (정산자액은 기납입보험료 기준이 아닌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피보험자의 병력, 보험금 지급 이력(건강상태) 등으로 슈퍼우량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보험수익자가 주보험 및 해당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지정대리청구인)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보험 및 해당 특약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17/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비랍니다.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제도성특약

지수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환 가능 조건 :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유의사항

-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18/35

(010-2285-8673)

주요용어의 정의

■ 유의사항

- 이하 내용에서 "분류번호"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 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진단)시점에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보험 및 특약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①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에서 분류번호(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발생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 진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 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법적 처형(Y35.5)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자연의 함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이 계약(특약 포함)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 감염병 진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에 해당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한시적인 장해에 대해서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이계약(특약포함)에서 장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원인에 의한 장해에 한하며,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전에 발생한 장해는 제외합니다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0(거미막하출혈), I61(뇌내출혈), I62(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뇌경색증), I64(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기타 뇌혈관질환), I68(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뇌혈관질환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허혈심장질환	"허혈심상실환"이라 함은 제8차 개성 한국표순실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0(협심증), I21(급성 심근경색증), I22(후속심근경색증), I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만성 허혈심장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19/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함)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의 직접적인 치료
-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상기 정의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 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다. 전문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청약서에 안내드린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철회 관련 서면 등을 발송하신 후 아래 연락처 등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콜센터(1588-3114)
-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도 공동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통해 가능
- ※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수집 • 이용 및 제공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21/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비랍니다.



■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을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신청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렵거나 중복되는 보장의 불만족 또는 보장범위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 청구 가능 → 가입금액 변경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 할증체로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표준체 상태가 된 경우 또는 상해보험에서 위험이 감소되어 직업 또는 직무위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등 ※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유지 기간 중에 언제든지 <mark>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mark>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서면 동의 철회시 계약은 해지되고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장래를 향하여"란 그 효과가 미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서면동의를 철회한 시점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mark>청약서의 중요한 사항</mark>에 대하여 <mark>사실대로 기재</mark>하고 <mark>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mark>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자 (컨설턴트)등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 타사 보험계약 가입 여부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효과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 상기 사유로 주보험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계약의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 사항

-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계약의 무효 사항

보험계약이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여기서 "서면에 의한 동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 •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 15세 미만자(실제 만 나이 적용),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사항]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거나 보장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사항]

■ 적용이율

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하는 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보험가격지수 예시표]

■ 보험가격지수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인 평균공시이율(2.25%)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값)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예시표

(기준: 40세, 월납)

(년) (년) 남사 여사 (만원)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삼성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2종(유해지환급금형)[표준체] 40 20 102.5 108.9 3,000	(SES)	(년)	(년)	남자	여자	(만원)
	삼성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2종(유해지환급금형)[표준체]	40	20	102.5	108.9	3,000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이하 내용에서 "분류번호"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 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진단) 시점에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유형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례
내용	A고객은 본인의 병력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고 OO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해당 병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 형2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사례
내용	A고객은 B고객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OO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고객이 사망해 A고객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 무효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동의"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유 형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내용	OO보험을 가입한 A고객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5년이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사항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보험금 청구시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형4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에 관한 사례
내용	암진단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한 A고객은 계약일로부터 50일만에 "위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유의사항	암진단이 포함된 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병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진단이 포함된 보험과 같이 계약일과 보장개시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각 상품별 약관에서 보장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 형5	장해의 판정에 대한 사례
내용	OO보험을 가입한 A고객은 길을 걷던 중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어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지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를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납입면제가 어려움을 안내
유의사항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보험나이 안내]

-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합니다.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 1. 보험금의 청구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 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심사합니다.



보험금 청구·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약관 내 '약관요약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성보험]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25/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성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주보험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주보험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주보험 약관에서 정한 질병 정의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 암진단보험금

- "암" 보장에 관한 세부내용은 [암 보장에 관한 유의사항]과 주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에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암"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되더라도 그 암이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으로 인한 경우(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암"으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약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특약은 보험기간 만료시 화급금이 없습니다.

소액질병보장특약	-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 수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해당 특약 약관 별표[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대상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 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질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개시일(갱신형특약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 약	암직접치료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요양병원이나 개인병원에 통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보험 및 특약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보장에 관한 유의사항]

- "암"이라 함은 주보험 및 해당 특약 약관 별표「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가.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 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 다. 주보험 및 해당특약 약관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
 - 라. 주보험 및 해당특약 약관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 마.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형자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010-2285-8673)



■ 공통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방암이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자궁암이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4(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및 C55(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전립선암이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이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갑상선암이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대장점막내암이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비침습 방광암이란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 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TNM병기분류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 ※ TNM 병기분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향후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암의 진단 확정 시점에 적용되는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을 따릅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27/35 전자서명용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유 형1	갱신형특약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함
내용	C고객은 가입당시 컨설턴트 B에게 특약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안내 받지 못했고 특히,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까지 납입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며 불만제기. 컨설턴트 확인결과 상품권유시 이미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이라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 C고객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험료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보장종료시점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함.
유의사항	갱신형 특약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으며, 주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갱신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보험 가입시 필수 안내사항으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갱신보험료와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전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어 관련 내용에 대해 꼭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사고보험금 상담 및 문의]

입원, 수술, 진단, 사망 등의 보험금 청구시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로 문의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삼성
 기타 유의사항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기타 유의사항

기타 유의사항

[보험모집자(컨설턴트)의 업무범위]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컨설턴트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 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컨설턴트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 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컨설턴트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및 그 소속 보험모집자(컨설턴트)의 업무범위]

- 회사는 보험대리점에 아래 권한만을 위탁하였으므로, 아래에 기재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에 효력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 ①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 ②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활동
 - ③ 보험청약서, 보험약과, 보험증권의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 ④ 보험료의 수령(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함)
 - ⑤ 대출의 소개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⑥ 기타 위 ①~⑤ 번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정한 업무
- 특히, 아래 업무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②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승낙,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 전환]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새로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기초율(적용이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일 이후 특정기간(예: 90일)이 지난 후 보장을 하는 경우, 보장제외기간이 다시 적용되어 보장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으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보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한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

(010-2285-8673)





삼성 기타 유의사항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보험가입내역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보험가입자 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가입내역을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조회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를 지정하실 수 있으며, 보 험기간 중에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를 따름)으로 하고, 기타 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를 따름)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 ▶ 민법상 상속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변경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 등을 통하여 계약 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 변경 방법 안내
- ▶ 구비서류: 신분증(대리 접수시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의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라?
 -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신청 및 변경방법 :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 ①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② 담당 컨설턴트 접수를 통해 신청 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 (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형자 (010-2285-8673)



기타 유의사항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31/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삼성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세법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및 지침 등에 따라 상세 조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①항 및 제②항]
-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 해지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 (단,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은 제외)
- * 보험계약: '보험시'에서 판매한 모든 생명/손해보험계약과 '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 모든 생명/손해공제계약, '우체국'에서 판매한 모든 우체국보험계약
- (1)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납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회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단, 6개월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최초 기본보험료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2017.4.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에 한함)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결정됨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계약〉[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함
-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 공제금이 없을 것
-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당사 판매중인 종신보험 전체 해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비과세 기준〉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 150만원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 ※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 계산시 순수보장성 특약의 보험료와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는 포함합니다.
- (2) 일시납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미만 월납 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③항 제1호]
 - 아래에 해당하는"보험료 합계액 1억원 합산 대상 모든 계약"과 이 계약의 납입할 보험료 총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계약은 10년 이상 유지하여도 과세

〈보험료 합계액 1억원 합산 대상 계약〉

- 일시납, 2/3/6개월납, 연납, 일시납+월납 등 월납이 아닌 계약
-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미만의 월납 계약
- 월납(5년납 이상)으로 가입하였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여 선납하거나,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을 한 계약,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지 않은 계약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2017.4.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에 한함)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④항에서 정한 종신형연금보험계약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입일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 비과세 기준〉

- · 2013.2.15이후 2017.3.31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A) ≤ 2억원
- · 2017.4.1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A + 2017.4.1이후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 ≤ 1억원
- (3)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⑥항]
 -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순수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연금전환/적립전환)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단, 사망에 의한 계약자 명의 변경은 피상속인의 계약체결시점부터)(1)및(2)의 비과세 기간(10년)을 다시 산정함
 - 단, 5년납 이상 월납 계약인 경우 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1)에서의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1)의 선납/균등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에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1) 및 (2)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시 변경된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하며, 계약변경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을 포함함
 - ・ 단, 순수보장성보험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150만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순수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연금전환/적립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가입일에 따라 (1) 및 (2)의 보험료 합계액을 계산하며, 월납 계약에서 (1)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의 보험료 합계액 비과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
- (010-2285-8673)

삼성 주요내용 안내확인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주요내용 안내확인

★표시된 **밑줄 친 부분**은 보험계약자께서<mark>직접 덧쓰기</mark>(전자적형태의 확인방식 포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상품설명서 등을 수령하고 그 중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이 ★ *채감* 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 *쩍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예금, 적금 또는 저축성보험이나 교육보험이 아니라 질병 등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보장에 관한 안내

-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 "비침습 방광암"이라 함은 방광의 이행상피세포층(transitional 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비침습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상태로 'AJCC 암병기설정매뉴얼[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Cancer Staging Manual] 제7판'에서 정한 병기분류상 TaNOMO인 방광암을 말합니다.
 - 단, 주보험 및 각 특약의 "암"의 정의는 서로 다르므로 보장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험 및 각 특약의 약관 또는 [암 보장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험, 암진단특약IVD(무배당), 암진단특약IVN15(갱신형,무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D(무배당), 암직접치료통원특약N15(갱신형,무배당)에 관한 사항

· 암직접치료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턴트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유지 기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시 계약은 해지되고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장래를 향하여"란 그 효과가 미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서면동의를 철회한 시점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010-2285-8673)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주요설명내용

보험회사, 보험모집자(컨설턴트)에 대한 정보(소속,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특약별 납입기간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e-클리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한 보험모집자(컨설턴트)의 주요 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주보험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특약가입 관련 안내,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청구 · 지급 절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암직접치료입원(통원)을 보장함에 있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 ・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에 대한 정의와 보험금 수준에 대한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 및 무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무해지환급금형의 경우 유해지환급금형과의 비교 포함), 갱신형 특약, 상품별 특이사항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주요 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모집자(컨설턴트)의 업무 범위(보험료·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대리점 및 그 소속 보험모집자(컨설턴트)의 업무 범위(보험료·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계약 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 사항

주보험·특약별 보험료, 보장내역, 소멸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용어의 정의,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하여 상품설명서를 이용한 설명에 관한 사항

상품설명서의 「보험차익 세제관련 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3대질병진단케어서비스, 당뇨케어서비스 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고지우량체할인특약(무배당), 슈퍼우량체할인특약(무배당)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 일정 요건의 건강상태 및 가입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입자격, 고지우량체/슈퍼우량체-표준체 보험료 비교 및 계약기간 중 중도청약 가능함을 설명 받았음

갱신형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mark>갱신보험료 인상</mark>, 보장내용, 갱신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설명

- 갱신형특약은 **3년, 5년 또는 15년 단위**로 갱신되며, 보험나이 증가, 위험률 증가 등으로 <mark>갱신시 보험료가 인상</mark>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갱신형특약의 보험기간동안 납입한 총 누적보험료가 보장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도 각 갱신형특약의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갱신형특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 상품설명서의 "갱신에 따른 보험료 예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34/35

- 본 상품설명서는 동일한 청약서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New종합건강보험(무배당) 일당백

- ※ 아래 <u>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u>에 컨설턴트 및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형태의 확인방식 포함)로 기재 하고 서명(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상품설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서명(전자서명 포함)하실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컨설턴트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 담당 컨설턴트 확인

컨설턴트 신현자 (은)는 위 내용 및 이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이용석 님에게 설명하고, 이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21 년 12 월 02 일 컨설턴트 생각 영 (인)

2. 보험계약자 확인

컨설턴트 신현자 (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아 ★ **설명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12
 월
 02
 일
 보험계약자
 카카오 인증
 카카오 인종

 친 권 자
 (인)

친 권 자 (인)

청약서 번호: 6252428462012021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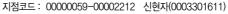
일시: 2021-12-02 10:26 AN 컨설턴트: 신현자 (010-2285-8673)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전자서명용

영수증번호: 62524284620120211202

신안성지점



고유번호: 19891258100005 핸드폰: 010-2285-8673

2021년 6월 기준 신현자 컨설턴트의 불완전판매율은 0.00% 입니다.[생보평균] 0.12%/[손보평균] 0.03% 불완전판매율이란 모집계약중 설명의무위반, 고객불만제기등으로 해지되거나, 법규 · 약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계약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품명 New종합건강일당백(무)_2종_표준체 보종코드 LP0555008 ※ 컨설턴트상세모집 경력은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구 분	기입금액(만)	보험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구 분	기입금액(만)	보험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보험	1,000	31,600	90세	20년					
소액질병보장VD(무)_2종_표준체	1,000	5,270	90세	20년					
뇌혈관질환진단특약D(무)_2종_표준체	1,000	26,660	90세	20년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D(무)_2종_표준 체	1,000	24,200	90세	20년					
암직접치료통원D(무)_2종_표준체	2,000	2,200	90세	20년					
					주보험+특약보험료		89,930	납입주기	
					선납(1)회		89,930	월납	
					납입보험료 계 (개별)		179,860	걸립	

※ 위 주보험 또는 특약에서 연령(OO세)으로 표시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 갱신형 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 위 납입기간 괄호 안의 '최대 OO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하며,

해당 연령이 되	는 계약해당일의 전열	일입니다.			갱신시 연령증	가, 기초율	등의 변동으로	. 인해 보험료기	ㅏ변 동 될 수 있	있습니다.		
	성 명(단체명)	이용석	주민번호(단체번호)		79092	4-1****	**		보험니	-}이		12
ᅰ아피	근무처(회사명)	아이언테크	업 종		人	누직			하시는	- 일	컴퓨터로데0 출	I터취 ₍₀₇₃₃₂₀
계 약 자	주 소	□ 자택 🗹 직장	(14348)경기 광명시	일직로72 (일	딕동,광명무역센터	터) A동 1	307호		휴대	폰	010-490	1-7168
	E-mail	lyslhj@hanmail.net							전	화		
	성 명(단체명)	이용석	주민번호(단체번호)	790924	-1*****	계약자	와의 관계		보험니	-}이	4	12
피보험자	주 소	□ 자택 □ 직장							휴대	폰		
	E-mail								전	화		
종피보험자	성 명(단체명)		주민번호(단체번호)			계약자	와의 관계		보험니	-}이		
	구분	성명(단체명)	주민번호(단체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Ŧ	l 분	성명(단	체명)	주민번	호(단체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지급비율 %					질병 -	상해시	이용	.석	7909	24-1*****	
보험수익자	지급비율				보험수익자 중도	중도·	선수익자					
	사망시 지급비율						후수익자			-		\
	%					[선수익자	작성란] 연금선수의	자가 연금수령 중 사	망시 연금수령권은	: - - - 후수익자에?	레 있으며, 상기 후수익	: 다지정에 동의합니다.
	지급비율					[서스0		,	الم المارية ا	[명:		

- * 청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약관 및 청약서를 상세히 설명받으시기 바라며 작성이 끝나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셔야 하며 대리작성이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시면 보험금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시 ①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 ②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③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 갱신형특약 표준미달체 계약의 부담보기간은 갱신일자가 아닌 계약(부활(효력회복)) 일자로부터 적용됩니다.
- * 지정인 알림서비스란 보험료 납입 후 고객님께 전송되는 알림톡 등을 가족 혹은 지인에게 재전송하시면 수신하신 분이 청약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청약서 뒷면 청약 관련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청약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본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보험자의 서면상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고, 보험약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받았으며, 약관의 주요내용 및 품질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귀사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별도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본인의 질병 등의 건강상태를 조회하거나 열람토록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형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이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청약서는 보험료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실시간 출금이제, 가상계좌를 통해 회사에 납입하는 경우, 영수증은 납입한 통장의 보험료 이체내역으로 대체하므로 통장이체 내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제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계약자,란에만 서명하셔도 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부모(천권자) 두 분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서 부본은 원본으로 제공해드리며, 그 외 추가적인 방법(서면, 이메일, 문자메세지)으로도 교부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담당 컨설턴트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자	성명	카카오 인증	서명	카카오 인증		성명	(관계:	서명
피보험자	성명		서명	일반	친 권 자 (후견인)	성명	(관계:	서명
	성명		서명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권자임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11202 102651

신용/상품설명/비교안내확인서/고지사항-일반/금융소비자확인/종합 필요서류 :

확인서

청약일자: 2021 년 12 월 02 일

삼성생명



ш	Ľ,	۶¥	
K	ί.	۳.	
6	87	X	

															100 Mg
■ 보험료 남	납입 및 7	타 송 i	금을 위한 계	좌정보		계좌 ² 기재 ⁹		2021년	12월	02일	12시	22분	PM		
금융회사		농협중인	낭회	예금주	☑ 계약자□ 기타	성	명	이용식	넉	서	명 :	카카오	인증		계약 청약서(계약자보관용) 후면의 계좌이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계좌번호	312	201855	78911	정 보	□ 피보험자	생년	크월일	1979.09	9.24	계약자: 관기	와의 	본인	연릭	뉚	01049017168
상기 계좌로	제1회 보험	별료/부 활	보험료 실시간	출금이체	▼ 동의 ^{※미동의시} 가상계좌로 입금	상기	계좌로	제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	체(부활	발보험료는	- 해당없	음)	☑ 동의
자동이체	희망일자 선	ᅼ택	☐ 5일		☐ 10일		15일)일		V 2	5일		
급여이체		□ 신	청	직 장		부	서			사	번			계약. 관	자와의 <u>반</u> 계
전북, 제주, हैं · 연금, 만기/년 다만, 아래의 ① 계약자와	이체 가능 금융: 하나(KEB), 한- 분할/휴면보험금 경우에는 자동 예금주가 다르: 약관 등에 따라	회사 : 경남, 국씨티, SC, 금 발생시 산 · 송금이 불 거나, 계약자 · 별도의 신	삼성증권, 유안타증 청하신 계좌로 별도 하므로 별도로 신 하와 수익자가 다른 경 청(연금지급 개시 신	권, 새마을금 통보 없이 입 형 해 주시기 년 경우 청 등)이나 청	금될 수 있습니다. 랍니다.	. <u></u> . <u></u> . <u>.</u>	자동이체 등 보험계약 7 다만, 계좌 회사가 확인	동의시 계약자5 가입 거절 시 납 정보의 오류 등 인 가능한 방법의	보관용 청약 입하신 제 으로 반환	약서 후면(1회 보험. 환이 불가	에 제공의 료는 고 하거나 2	리는 안내사 객님이 기재 약자와 연력	항을 반드시 하신 계좌력 막이 불가한	시확인 b 로 돌려되 한 경우,	
			포함) 수신에 동의		▼ 동의함(계약자)	(난(콜센터, 모 우아해지 포함				용한 계약	약해지		▼ 동의함
* 가존에 받 (안내장 예. * 스마트 안내 URL(인터넷	시: 변액보험겨 란, 우편안내장을 휴 주소)을 보내드리는	당이 있으실 약변동안니 라면 등 하다 하다 함께 하다	경우, 동의내용이 함 H, 변액자산운용보고 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 (키 다.	서 등)	<u> </u>	;}) »	*법인계약 * *'아니오'인 / 실명번호 / 국적(와 * 실제소유기	H에 대한 실지 작성 불필요, 계익 ! 경우 아래의 실자 ⓒ(대한민국 국민: 국인의 경우)을 7 자란 해당 금융거	관계인이 (네 소유자 성 주민번호, 재 바랍니	아닌 경우 (성명(국적이 외국인: 와 다.	실명증표 대한민국 국인등록	제출 필수 라이 아닌 경우 번호) 을 보는 개인을	는 영문으로	일기재)	✓ 예 □ 아니오
	ᅢ서비스 수신에 된 내 서비스 수				▼ 동의함(계약자) 동의함(피보험자	()	세법상 C *'예(미국), (가성명: 대한민국 외(예(미국 외)'에 체크 르게 신고 또는 제한	 .하신 경우	FATCA/C	RS 본인	- - 까? 확인서를 작성	해주시기바	랍니다.	국적: ☐ 예(미국) ☐ 예(미국외) ✔ 아니오(대한[국만)
안내서비스 ※ 신청하지 않	절 사유, 서비 를 신청합니다 은 경우 유선, 우편 <mark>수령방법을</mark> 선	. 등으로 안내 된		청약 관련 문	자 ✓ 신청함 ✓ 모바일(휴대폰)			ᆤ자 본인이 남자 지정 · '							● 약정함
※ 모바일/이(방문전달시	내폰)/이메일은 (메일 증권 전달 설 보험증권 수령 (방문전달) 필요시	실패시 서면고 후 서명 확인	교부(방문전달) 드리며 <u>[</u> 이 필요합니다.	,	 이메일 법인계약자방문전달			을 통해 보험 으로받는 경우 약					វ 자약관으로	! 전달)	▼ 동의함
지정대리청	l구인 지정		 자의 「가 족 관계등록!		다 요청) □ 지정불 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0 리청구인으로 지정할 경우, 보	내 친	족」인 경우		청구인으				고하여 주.	시기 바	랍니다.
지정대리청-	구인1(대표)	성명		피보험 관											
보 계얀	 이 계얀자	가 「번	이 이 경우 (아래 내용	용을 작성 · 활인하	ŀOł .	 주시7	기 바란니	다						

▋본 계약의 계약자기	<mark>ㅏ「법인」인 </mark>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 · :	확인하여 주	시기 바립	밥니다.			
주요 안내사항 설명 확인	법인 계약 관련 고	l세 및 손비처리 등 세제 관련 주요 (안내사항에 대해 설	l명 받았음을 -	확인합니다.	계약자		(서 명)
보험가입 목적	☐ 자산 운용 /활·	용 🔲 복리후생(퇴직금,급여 등)	피보험자	직위	□ 대표이사 □	임원 🗌 종업	원 🗌 기타()
피보험자와 임직원과의 관계	□ 임직원 본인	☐ 대표/임원의 가족	S업원의 가	족	□ 가족 아님			
서비스콜 받으실 분	성명		직 위			연락처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①	(서 명)	공동대표②		(서 명)	공동대표③		(서 명)
비영리법인 전용 문항	보험료는 법인	입이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직 의 기본재산이 아닌 운영재산으로 I 서류제출필요(주무관청의 정관변경하기서, 변	로 납입됩니까?		ih였고, □ 여	l □ 아니	※'아니오'에 체크하 오 서류제출이 필요하 보험가입이 제한될	· 가거나,
▼사비자 보증 · 분와저파	매 예반은 의하 키	커선터트 와저파매 화이 (커선티	러트 자선) ▮시	일화이즈 호	바이 (커석터트 자신	전)		

소비자 보호 ·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컨설턴트 완전판매 확인 (컨설턴트 작성)	신원확인증 확인 (컨설턴트 작성

θ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습니까?	V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까?	V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설명하고 전달하였으며, 자필 서명을 받았습니까?	V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됨을 설명 하였습니까?	V
고개과이 며단은 토해 보 보험산푸()] 정산적으로 와저 파매되 사실은 화이하였으며	

상기 확인사항이 다를 경우 컨설턴트 본인이 일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발급일: **20100706** 발급기관: 경기도 안성시 기타 확인증 작성 운전면하증 □ 면허번호: 일련번호: 발급기관: 기타 확인증 작성 일련번호:

※계약 동의여부 확인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자」란만 작성 바랍니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청약일 또는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 계약의 호력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다음의 승낙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② 청약서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직업·직종별 보험가입 한도금액의 초과 청약액
- · 계약의 무효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보장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사망보장계약에서 만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함)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아래의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계약전 알렉외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 남입이 언체되는 경우남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전 유의사항

- · 청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약관 및 청약서를 상세히 설명 받으시기를 바라며 작성이 끝나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셔야 하며 대리작성이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시
- ①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
- ②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 ③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 이를 이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 휴면보험금 관련 안내
- 해지(실효)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계약을 휴면계약(보험금)이라 합니다. 휴면상태에서는 부활(효력회복)이 불가하며, 휴면계약 보험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변액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사망 또는 타인의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 기준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배우자는 앞의 1, 2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 ·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R/T) · 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정보(계좌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계좌이체 약관 및 관련 안내사항

자동계좌이체 약관

제1조 약판의 적용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이하"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①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② 토요일 ③ 근로자의 날

제3조 출금

-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 합니다.
- ② 제 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지4조 과실책임 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금을 시도하였으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한니다

제5조 부분출금 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일부 업무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더라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현금 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제6조 출금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 단, 같은 종류의 자동이체가 한 계좌에 여러 건의 출금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용기관이 요청한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7조 최초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개시일로 합니다.

제8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 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① 은행이 납부자로 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etem : ARS),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 ②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③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vinfo.or.kr)을 통해 납부자로부터 서면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 은행에게 전달하는 방법 1903 시청시 계속기하 데소에 이한 자동이에(시고 해지 병경(시청시 가 이용기관병 은영기준이

제9조 신청서 자물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신청시 각 이용기관별 운영기준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 또는 자동이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각 운영기준에 따라 신청서가 이용기관에 접수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제10조 출금가준 및 이외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납기일 당일 은행의 운영방식에 따라 계좌의 잔액확인시간 및 출금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은행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고,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정보자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금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업무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 계좌가 1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에 신청시 약판 적용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4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자동이체 보험료 출금 관련 안내사항

- ・납입 해당월 보험료 중 이체계좌와 이체희망일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 건별로 이체하지 않고 하나로 합산하여 이체하나, 이체희망일이 해당월의 말일자가 아니면서 이체희망일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월의 말일자에 이체되는 경우와 연체보험료가 이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 건별로 각각 이체합니다. 잔고부족 등으로 이체희망일에 이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5일 간격으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 자동이체 의뢰일 하루 전부터 자동이체일 당일(영업일 기준, 각 해당일을 포함) 사이에 자동이체 해지, 이체일 및 이체계좌 변경 등 자동이체 관련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은행 등의 자동이체 업무처리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하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해지 · 변경 등 신청 전 기준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자동이체일 하루 전부터 자동이체일 당일(영업일 기준, 각 해당일을 포함) 사이에 보험계약 해지, 감액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은행 등의 자동이체 업무 처리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해지, 감액 등을 하시기 전 기준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자동이체일+1영업일에 이체된 금액과 이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이자를 해당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一 天	악절	ᄓᅙᆝᄼ	시ス	ᅥ
	$\neg =$	<u> </u>	∟' כ	つ^`I

본인이 귀사에 청약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서 명)	입금은행:	친권자(후견인) :	(서 명)
연 락 처 :		계좌번호 :	친권자(후견인) :	(서 명)
신청일자:		예 금 주 :		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피보험자의 단독친권자임을 확인합니다.

[청약철회 신청안내]

-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가 콜센터(1588-3114)로 연락 주시거나 청약철회 신청서를 가입 지점으로 등기우편발송(우체국소인 기준) 또는 계약자가 내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콜센터 전화신청은 불가)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하거나, 전문금융소비자 (컨설턴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전환할 경우 전환청약후 6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합니다. 또한, 전환청약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실손전환청약을 철회할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2.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이 때, 반환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돌려 드립니다.
- 3. 청약철회한 시점 이후(청약철회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때에는 발송일 포함)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4.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청약철회 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 5. 계약자 본인이 인터넷본인인증 또는 당사에 등록된 비밀번호를 통하여 삼성생명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 이행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1/2]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영수증번호: 62524284620120211202 컨설턴트 : 신현자 0003301611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 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헌	사항		✔ 전체 동의함			
수집ㆍ이용 목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보험금 등 지급·심사 위·수탁사무의 수형보험원가관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보험사기 조법률 및 국제 협약 등의 의무 이행 금융거래 전성·해지·변경, 이체(자동·R/T 이체 포함), 입	방 ㅣ 조사연구(리서치),서비스 제공, 순보험 사, 분쟁 대응 및 민원처리 적부 및 사고조사(관련업무(보험계약, 보험금청구, 보험계약대출	요율의 산출ㆍ검증 보험사기 조사 포함)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	의 보존기간을 따름)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료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뜻합니다.					
l 수집 · 이용 항목						
고유식 별정 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등 등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 (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진료기록(건강검진 포함)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가족관	반계, 취미				
▷ 신용거래정보	당사·타보험사(체신관서(우체국보험), 공제사업 지급관련정보(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 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손해사정서 금융거래 관련 이체 및 입·출금 정보(계좌개설 보험계약대출정보(대출실행일, 대출금, 금리, 상	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등), 등),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법률 및 국제협약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내역, 신청 ·	손해사정업무 및 그에 부수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			
▷ 신 용능 력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 신 용 도판단정보	압류 및 체납처분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국가기관 등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은행연합 신용정보회사 등 :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 보험회사 등 : 생명 · 손해보험회사, 국내 재 보험협회 : 생명 · 손해보험협회	합희, 금용결제원 종합신용정보집중기 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회사	관 : 한국신용정보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국가기관 등 :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등 법령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 보험계약 신용정보회사 등 : 당사 요청 정보 제공을 위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 보험협회 : 보험계약 관련 업무지원(휴면보	약대출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 한 대상자 식별 │ 보험회사 등 : 중복 보 동인수, 비과세 상품의 가입한도 확인	리 및 활용 등 기관의 업무 1럼 확인 및 비례보상,			
정보를 이전할 수 있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 내지점이 재보험계약 가입 판단 지원, 보험계약 공동 습니다.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지공 항목	조미드림씨는 이그이드림씨는 오징어라씨는	그 이 사법 전단 제고에 들었는 사람이	FOI-ITIONS A FOI-L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의로 함시의 결정 학생에에 된 한 정도 (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위 「수집·이용 항목」의 개인(신용)정보 (단, 각 7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향후 보험계약체결·유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 등이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또는 변동되는 사항을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 · 이행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2/2]



3. [국외]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 자의 이 용목 적	보험계약의 인수심사, 보험계약 공동 인수,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시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 (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 용)정보	위 「수집·이용 항목」의 개인(신용)정보 (단, 각 제공	위 「수집·이용 항목」의 개인(신용)정보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등의하지 않음	✔ 동의함						

4.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개발원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은행연합회 * 조회대상기관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회목적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목적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상담, 보험계약대출 체결·유지·관리, 보험금 등 지급·심사,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위 조희 결과는 귀하와의 보험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보험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보험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 상해에 관한 정보 (상병명, 진료기록, 기왕증 등)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등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사고정보 포함), 인 신용정보주체의 대출/보증 등 거래내용, 신용도, 재· 신용등급 · 신용평점 등 신용정보를 가공한 정보		
▷ 신 용능 력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5. 개인(신용)정보 동의 관련 추가확인 사항

최근 1년내 실손/가입설계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직접 동의하였습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 관계자가 각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성년인 계약관련자가 복수이고 각각의 법정대리인이 다를 경우에는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기재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가 각각 성명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계 약 자	성명	카카오 인증	서명	카카오 인증
	성명		서명	
피보험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예 금 주	성명		서명	
디저대기취기이	성명		서명	
지정대리청구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수익자	성명			서명				
구덕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친 권 자	성명	(관계 :)	서명				
(후견인)	성명	(관계 :)	서명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단독친권자임을 확인합니다.

[CISO 심의필 2021-008] 청약일자: 2021 년12 월02 일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비교안내문은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청약서 번호로 발행됩니다.



■ ■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보험계약 이동시 나이.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과소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삼성생명을 사랑해 주시는 이용석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기존 보험계약 중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지 않거나 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예정)한 후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계약자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 설명함으로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보험중개사 제외)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한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약자) 이용석(은)는 당사 및 타사의 기존 보험계약 및 신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컨설턴트(보험설계사) 신현자로부터 충분히 비교설명 받았으며,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 · 설명 받은 보험계약별 중요사항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 듣고 동 계약을 청약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기 위하여 컨설턴트(보험설계사 등) 로부터 당사 및 타사의 기존 보험계약을 미리 해지하거나 향후 해지하도록 권유받은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 년 12 월 02 일

71101-1 -10171	Į I	피보험자		(서명)	
책임자 확인란	7	친 권 자		(서명)	
		 친 권 자		(서명)	
		· <u></u>		. 10/	
	ā	컨설턴트	الم الم	(서명)	8

페이지

1/5

계 얀 자 카카오 인증 (_{서명)} 카카오 인증

1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비교안내문은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청약서 번호로 발행됩니다.



■ ■ 당사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자료

삼성생명에 이용석 고객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현재 유지중인 계약은 3건이며. 실효 상태중인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시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은 0건입니다.

확인

- ※ 실효계약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 해지된 계약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부활이 가능한 계약을 말합니다.
- ※ 소멸된 계약이라 함은 해지계약, 시효계약, 청약철회계약 등을 말합니다.
- ※ 시효계약은 실효계약의 상태가 3년이 경과되어, 부활이 불가능한 계약을 말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위하여

다음의 중요 사항에 대해 당사 및 타사의 기존 보험계약과 비교·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V

[비교 · 설명이 필요한 중요사항]

보험료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 보험계약별 중요사항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은 모두 수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보시면서 담당 컨설턴트(보험설계사 등)로부터 비교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추가납입이 가능한 동일한 상품 유형의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동 계약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는 것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에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보장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적립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추가납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험계약에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별도의 새로운 저축성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것보다 해지환급률 및 만기환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추가납입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도 및 가능시기 등 제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의 보험료 납입계획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시기 전에 동일한 보장내용의 '납입이 완료된 보험계약'이 있다면 추가 부담없이 보장이 가능하므로,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시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과 합산시 특정보장에 대한 보험가입한도가 초과되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시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2/5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비교안내문은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청약서 번호로 발행됩니다.

▋당사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자료

고객님의 현재 당사 유지계약은 3건, 실효 및 6개월 이내 소멸 계약은 0건 입니다.

	구분		새로운			당사 기존보험계약		
			보험계약	1	2	3	4	5
	상품명	-	New종합건강일 당백(무)_2종_표 준체	無삼성리빙케어(종신2종)1.3*	통합유니버설종신 3.0(무,보증비용부 과형)기본형*	급여 실손_질병형		
	계약지	ŀ	이용석	이용석	이용석	이용석		
	피보험:	자	이용석	이용석	이용석	이용석		
	가입금액(만원)	1,000	5,000	3,000	5,000		
	납입주	기	월납	월납	월납	월납		
	보험료(원)	89,930	124,700	124,960	13,440		
	예정이자율	울(%)	2.00	3.75	2.00	2.00		
	보험기	간	90세	종신	종신	1년		
	납입기	간	20년	20년	20년	1년		
	계약구	분	_	유지	유지	유지		
	해지환급금(원)		_	22,285,403	1,645,023	21,734		
		질병사망	_	5,000	3,000	_		
	사망보장	재해사망	_	5,000	3,000	_		
	OLHTL	암진단	1,000	_	1,500	_		
주	암보장	암수술	_	_	_	_		
요	리빙 (중대한질병	케어 진단/수술)	_	4,000	_	_		
보	뇌출혈		1,500	_	1,500	_		
장	급성심근경	병색증 진단	1,500	_	1,500	_		
내	입원보장	질병입원	_	3	_	_		
용	(1일당)	재해입원	_	3	_	_		
(만	실손	질병입원	_	_	_	5,000		
원)	의료비 의료비	질병통원	_	_	_	20		
	(보상한도	상해입원	_	_	_	5,000		
	금액)	상해통원	_	_	_	20		
추	가납입기능0	부(O/X)	Х	Х	0	X		

- ※ 상기 예시된 가입금액은 주보험의 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해지환급금을, 이외의 경우에는 이 안내장 발행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환급금을 표시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시 실제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각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참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5건 초과건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실효계약은 지금 가입하시고자 하는 신계약의 인수여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가입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부활(효력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다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사항을 '*' 처리합니다.
- ※ 예정이자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상품명에 '*' 표시된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을경우 최저보증이율)'이며, 금리연동형 이외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입니다.
- ※ 공시이율은 이 안내장 발행일 기준의 이율로, 실효/소멸계약의 경우 이 안내장 발행일 기준 유지되었을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입니다.
- ※ 적용이율은 주보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이율이며, 적립이율로 적용되는 공시이율 등과는 다릅니다.
- ※ 보험기간은 연금상품에서는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보험금이 매달 또는 매년 지급되는 경우 표준이율 또는 평균공시이율로 연복리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추가납입 기능 여부(O.X)는 각 상품별 추가납입 기능의 부가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해당 계약의 추가납입 가능 여부, 시기 및 한도는 가입시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 계약체결 후 경과기간, 연금개시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의 상태(유지, 실효, 소멸)는 해당 청약서 발행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외화보험(보험료 등의 납입, 보험금 등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의 경우에는 환율 1달러(USD)당 1,000원(KRW)을 적용하여 단순 예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납입시 또는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시에는 각각 해당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또는 지급기준환율에 따라서 원화환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는 귀하의 보험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각 보험계약별로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삼성생명은 본 자료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거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점: 신안성지점 ᅟᅱ

- 컨설턴트 : 신현자

- 발행일시: 2021-12-02 10:26 AM - 휴 대 폰: 010-2285-8673

- E-mail: tlsguswk3313@samsunglifelebm

3/5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비교안내문은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청약서 번호로 발행됩니다.



4/5

■ 타사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자료

고객님께서는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타사 보험계약이 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소멸 예정인 타사 보험계약이 있으십니까?

□ 예, 있습니다.

☑ 아니오, 없습니다.

주) 상기 답변이 '예'인 경우 아래의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자료 작성

※ 비교설명 내용은 컨설턴트가 작성하되 별도 설명자료 있을 경우 해당자료 첨부가능

[타사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자료]

신규계약	비교항목	기존계약 1	기존계약 2
	상품명		
	보험목적		
	가입금액		
	납입주기		
	보험료		
	예정이자율		
	보험기간 / 납입기간		
	해지환급금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금액		
	보험회사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 각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는 행위금지)
- ※ 예정이자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며, 금리연동형 이외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입니다.
- ※ 본 자료는 귀하의 보험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각 보험계약별로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삼성생명은 본 자료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거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지 점: 신안성지점 - 컨설턴트: 신현자

- 발행일시: 2021-12-02 10:26 AM - 휴 대 폰: 010-2285-8673 - E-mail: tlsguswk3313@samsunglifellebh

[청약서번호: 62524284620120211202

※ 본 비교안내문은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청약서 번호로 발행됩니다.



[타사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자료]

신규계약	비교항목	기존계약 3	기존계약 4
	상품명		
	보험목적		
	가입금액		
	납입주기		
	보험료		
	예정이자율		
	보험기간 / 납입기간		
	해지환급금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금액		
	보험회사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신규계약	비교항목	기존계약 5	기존계약 6
	상품명		
	보험목적		
	가입금액		
	납입주기		
	보험료		
	예정이자율		
	보험기간 / 납입기간		
	해지환급금		
	주요보장내용 및 보험금액		
	보험회사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 각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는 행위금지)
- ※ 예정이자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며, 금리연동형 이외 상품의 경우 적용이율입니다.
- ※ 본 자료는 귀하의 보험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각 보험계약별로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근거가 될 수 없으며, 삼성생명은 본 자료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거나 부담하지 않습니다.

- 지 점: 신안성지점 - 컨설턴트: 신현자

- 발행일시: 2021-12-02 10:26 AM - 휴 대 폰: 010-2285-8673 - E-mail: tlsguswk3313@samsunglife.com

5/5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전자서명용

영수증번호: 62524284620120211202 상 품 명: New종합건강일당백(무)_2종_표준체



- 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작성 또는 전 자적 형태의 확인방식(고객동의하 질병정보 자동반영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mark>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mark> 될 수 있으며, 특히 1~6번, 7번(부업·겸업 제외), 8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mark>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mark>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 ·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을 「최초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일) 이 후로부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 (이래 질문의 최근 3개 월, 1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대리점에게 구두로 알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두되므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 를 거쳐 제공됩니다.

피보험자 고객님 이용석 다음 각 항목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 1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2 \checkmark ※혈압강하제란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각성제란 신경계를 흥분시켜 잠이 오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3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4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V**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아래 질병으로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5 **V** ①암 ②고혈압 ③협심증 ④심근경색 ⑤심장판막증 ⑥뇌졸중(뇌경색, 뇌출혈 포함) ⑦당뇨병 ⑧백혈병 ⑨간경화증(간경변증, 간섬유증 포함) ⑩에이즈 및 HIV 보균 [장기요양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에 다음과 같은 기구, 장비를 사용하신 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까? 6 ① 휠체어(보조이동장치 포함) ② 목발·지팡이 ③ 도뇨관(소변줄) ④ 산소호흡장비 ⑤ 인공호흡장비 ⑥ 투석장치 ⑦ 기타의료보조장구 컴퓨터로데이 터취출 귀하(피보험자)의 직업(부업ㆍ겸업ㆍ위험취미 포함)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근무처(직장명): 아이언테크 사무직 하시는 일: 7 ※ 위험취미란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자동차/오토바이 경주. 위험취미: 빙벽/암벽등반을 의미합니다. 해당하시는 경우 '위험취미'에 기재 바랍니다. 부업(하시는 일) : 겸업(하시는 일) : ✔ 승용차(자가용) 승용차(영업용) 승합차(자가용) 승합차(영업용) 현재 운전을 하십니까? 오토바이(자가용) * 50cc미만 포함 오토바이(영업용) * 50cc미만 포함 운전을 하시는 경우, 어떤 차종을 운전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화물차(자가용) 화물차(영업용) 8 ※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 등(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의자차는 제외)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체크 바랍니다. 운전하지 않음 기타(건설기계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 아니오 9 예 (국가: ,기간: 개월, 목적 : ※ 해외위험지역이란 전쟁지역, 미개척지(열대/한대), 등반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예 ✔ 아니오 최근 1년 이내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십니까? 10 아니오 ✔ 예 (횟수 : 주 음주를 하십니까? 음주를 하시는 경우, 횟수와 주량을 작성해 주세요 회, 주량: 소주 기준 182 12 가장 최근에 측정하신 키와 몸무게를 작성해 주세요 키: 몸무게: ※임신중인 경우 주 cm kg 없음 5천만 이하 1억 초과 **✔** 7천만 이하 1억 이하 연 평균 소득(계약자 기준)을 선택해 주세요 13 1~6번 항목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질병(상해)명 또는 검사종류/결과 완치여부 치료기간 치료방법 및 내용 (복수선택 가능) 재발경험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투야 아니오 시작:()년 ()월 기타(종료:()년 ()월 총(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수술 투야 시작: ()년 ()월)월 총()일 기타(종류:()년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트야 시작:()년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질병확정진단 지료 입원 트야 시작: ()년 ()월)일 기타(종료:()년 ()월 총(※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계약자께서 직접 기입해 주세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이용석 는 보험설계사 시혀자 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구두 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반시의 효과(계약해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카카오 인증 카카오 인증 계약자 성명 서명 (관계:) 서명 친권자 (후견인) 피보험자 서명 (관계:) 서명 성명 성명

> 청약일자: 2021년 12월 02일 삼성생명 SAMSUNG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단독친권자임을 확인합니다.

다른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직업분류표

직 업	일빈	등급 ! 상해	입원	직 업	일반	등급	입원	직 업	일반	등급	
경영/사무/금융/무역직/관리직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В	С	В	무대감독(연극, 오페라, 뮤지컬)	В	В	Е
회사 사무직 종사자	Α		Α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С	С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В	В	E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В	_	D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В	В		스포츠 감독 및 코치(격투기 이외)	В	С	[
녹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제	다 B	В	В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С	С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В	С	[
서비스직				품질검사원	В	В	В	연기자(배우)	В	В	ı
백배원(차량운전)	D	_	С	생산관리 기술직 종사자	В	В	Α	방송 프로듀서(PD)	В	Α	
선물내부 청소원	В		С	자동차 경정비원(튜닝포함)	С	С	С	미술가	Α	Α	
환경미화원	Ε	Ε	Ε	기계공학 엔지니어 및 연구원	Α	В	Α	연주가	Α	Α	
두방장 및 조리사(선박 조리사 제외)	В		С	용접원(취부원)	D	Ε	D	작가 및 평론가	Α	Α	,
식당 종사원	В		С	선반기 조작원(완전자동 제외)	С	D		사회복지/상담/보육직			
두류서비스 종사원(유흥주점)	D	_	D	건설업체관련 현장관리자	В	В		사회복지사	Α		
미용사(이발사)	Α		В	건축가 및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Α		Α	성직자, 종교인	Α	Α	
[[부 및 체형관리사	Α		В	건축목공원	Е	Е	D	무속인	D	•	
비일샵 종사자 	Α	Α	В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컴퓨터, 복합기 등)			Α	보육 교사	Α	Α	
-래방 종사원	В	С	D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완전자동)	D	Е	Е	영업/판매직			
음료서비스 종사원	В	В	С	운송/수송				슈퍼마켓, 편의점 판매원 및 자영업자(개인사업)		В	
유흥관련업체 경영 및 사무관리자	D	_	С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2.5톤 이상)	С	_	С	의복,신발및관련제품판매원및지영업자(개인시업)		В	
목욕관리사	В	С	В	영업용 특수차 운전자	D	Ε	_	백화점 판매원	В	В	
당기 부사관 및 준위	В	С	В	영업용 승합차 운전자(26인승 이상)	С	_	D	방문 판매원	В	В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E		E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2.5톤 미만)	С	_		자동차 영업원(중고차)	В	В	
일반경찰관	В	_	Α	6종건설기계 운전자(특수건설기계3종)	D	_	D	의료장비 및 용품 기술 판매원	Α	В	
19구조 대원	С	D	С	영업용 일반건설기계 운전자	С	D	С	주유원	С	_	
병비원	В		В	지게차 운전원	С	В	С	신용카드 모집인	В	В	
탁원 및 다림질원	В	В	Α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일반택시)	D	E	E	매표원	В	Α	
U지니어/기능직	_			항공기 객실 승무원	С			농림어업/축산업	_	_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В		В	비행기 조종사	С			작물재배원(곡식, 채소, 과수, 원예)	D	С	
<u> </u>	A	_	A	선장	Ε	E	Ε		Α	D	
실반기계 조립원	D	С	С	의료/간호직				낙농업관련 종사원	С	-	
연기 ·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В	В	В	의사		A		가축 사육 종사원	С	Ε	
선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С		C	간호사	A			농업 단순 종사원	Ε	Ε	
선기전자제품 조립 및 검사원	В		A	요양보호사	A	A		학생/주부/무직/기타	٨	^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C	С	A	치과기공사	В		Α	초 · 중 · 고등학생	A	A	
선기공학 엔지니어 및 연구원	A		A	지료사 보조원	В	Α	В	전업주부	A	A	
생동 · 냉장 ·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D	_	С	문화/예술/디자인직	П	0	П	무직	E	D	
데빵사 및 제과원	В	В	R	인테리어 디자이너	В	С	В	61세이상 남자 및 여자(직업종사자 제외)	C	C	_

1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안내

	댠군	D군	C군	B군	A군
사망보험금	2억원	6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장해보험금	2억원	5억원	10억원	12억원	15억원
입원보험금	2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6만원

- ㆍ 위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유사한 직종의 등급을 적용하며, 위 분류표에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위험도가 높은 쪽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 · 개인 및 단체상품(기업주 부담 상품은 제외)의 기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함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괴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초괴금액을 감액합니다. (단, 보험가입급액의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는 제외) · 위험등급별로 왼쪽에 명시된 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사망 및 장해보험금은
- 사망등급, 입원보험금은 입원등급 적용) · 상해등급은 상해보험 보험료에 적용되며, E/D는 고위험, C/B는 중위험, A는 비위험을 의미합니다.
- ㆍ 상해보험 위험지수 적용대상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운전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포함)이 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증권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l 법인이 청약하는 경우, 세제 및 손비처리 등 관련 주요 안내사항

- ㆍ 수익자(사망수익자, 상해수익자, 만기수익자, 연금수익자 포함)가 법인이 아닌 경우 수익자가 임원(대표 포함) 또는 그 상속인인 계약에서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임원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업원 또는 그 상속인인 계약에서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손금 산입될 수 있음)
- · 피보험자가 임원인 보험을 퇴직금 용도로 활용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명의의 보험계약은 CEO의 개인 자산이 아니므로 CEO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① 임원 퇴직시 법인명의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보험계약의 평가액을 포함한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계산법에 · 손비처리 관련 내용은 각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 세무사와 확인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향후 실제 퇴직소득 수령시 당시 법률규정(과세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② 임원 퇴직시 「법인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또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평가액」은 귀사의 손비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손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법인명의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보험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전자서명용

영수증번호: 62524284620120211202 상 품 명: New종합건강일당백(무)_2종_표준체



추가 병력고지용

- 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시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 또는 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적 형태의 확인방식(고객동의하 질병정보 자동반영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 다음 사항을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구두로 알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 를 거쳐 제공됩니다.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 ·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
- ·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을 「최초 계약해당일(또는 직전 부활일) 이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mark>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mark> 후로부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기간 (아래 질문의 최근 3개 거<mark>절</mark>될 수 있으며, 특히 1~6번, 7번(부업 · 겸업 제외), 8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 월, 1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 이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 피보험자 이용석 고객님

					10 1
다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문항 중 '여	'라고 답한		으로 작성해 주세	요.	
질병(상해)명 또는 검사종류/결과	재발경험	완치여부	치료기간		치료방법 및 내용 (복수선택 가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 □ 종료:()년 ()월 총()일	기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시작:()년 ()월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년 ()월 총()일	기타 ()
※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 계약자께서 직접 기업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계약전 <u>알 릴 약</u> 게양적 아리이므시하의 구 드 로마 아리 겨의					석 는 보험설계사 신현자 로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까야저 어린이트 사하는 그 그 그만 아리 겨어	게이저 어린이	모드 미해하 거() 린	이마나이어 등교(계)	OF THE L	그사네야 ㅁ어그 !!!!! 느낌!!!!!!! 서녀의 느어이머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성명	서명	
피보험자	성명	서명	

친권자	성명	(관계:)	서명	
(후견인)	성명	(관계:)	서명	

□ 다른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단독친권자임을 확인합니다.

청약일자: 2021년 12월 02일 삼성생명 SAMSUNG

| 직업분류표

1 782 772											
직 업	9	등 반 상	급 네 입원	직 업	일반	등급	입원	직 업	일반	등급	입원
경영/사무/금융/무역직/관리직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В	С	В	무대감독(연극, 오페라, 뮤지컬)	В	В	В
회사 사무직 종사자	,	A A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원	С	С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В	В	В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ВЕ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В	В		스포츠 감독 및 코치(격투기 이외)	В	С	D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업체 사무직 관리	자	ВЕ	В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С	С	С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В	С	D
서비스직				품질검사원	В	В	В	연기자(배우)	В	В	В
택배원(차량운전)		D D	•	생산관리 기술직 종사자	В	В	Α	방송 프로듀서(PD)		Α	В
건물내부 청소원		ВС		자동차 경정비원(튜닝포함)	С	С	С	미술가		Α	
환경미화원		E E	_	기계공학 엔지니어 및 연구원	Α	В	Α	연주가		Α	
주방장 및 조리사(선박 조리사 제외)		ВЕ		용접원(취부원)	D	_	D	작가 및 평론가	Α	Α	Α
식당 종사원		ВЕ		선반기 조작원(완전자동 제외)	С			사회복지/상담/보육직			
주류서비스 종사원(유흥주점)		D D	_	건설업체관련 현장관리자	В			사회복지사		Α	
미용사(이발사)		A A		건축가 및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Α			성직자, 종교인		Α	
피부 및 체형관리사		A A		건축목공원	Ε	Ε	D	무속인	D	•	D
네일샵 종사자		A A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컴퓨터, 복합기 등		С		보육 교사	Α	Α	Α
노래방 종사원		ВС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완전자동)	D	Е	Е	영업/판매직	_		
음료서비스 종사원		ВЕ		운송/수송		_		슈퍼마켓, 편의점 판매원 및 자영업자(개인사업)		В	В
유흥관련업체 경영 및 사무관리자		D E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2.5톤 이상)	С	_		의복,신발및관련제품판매원및지영업자(개인시업)		В	В
목욕관리사		ВС		영업용 특수차 운전자	D			백화점 판매원	В	В	В
장기 부사관 및 준위		ВС		영업용 승합차 운전자(26인승 이상)	С	D		방문 판매원	В	В	D
특수병과군인(영관급 제외)		E E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2.5톤 미만)	С	D		자동차 영업원(중고차)	В	В	D
일반경찰관		ВЕ		6종건설기계 운전자(특수건설기계3종)	D	D		의료장비 및 용품 기술 판매원	A	В	D
119구조 대원		C D		영업용 일반건설기계 운전자	С	D		주유원	С	С	С
경비원		ВС		지게차 운전원	С	В		신용카드 모집인	В	В	D
세탁원 및 다림질원		ВЕ	Α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일반택시)	D	E		매표원	В	Α	В
엔지니어/기능직				항공기 객실 승무원	С			농림어업/축산업	_	0	D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B C		비행기 조종사	C E		A E	작물재배원(곡식, 채소, 과수, 원예)	D	C D	D
인쇄기기관련 조작원		A C		선장					A	С	A C
일반기계 조립원				의료/간호직	٨	۸	٨	낙농업관련 종사원	С		
전기 ·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ВЕ		의사				가축 사육 종사원	C F	Ε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전기전자제품 조립 및 검사원		C C B E	C	간호사 요양보호사				농업 단순 종사원 학생/주부/무직/기타	E	Ε	Ε
신기신자제품 소급 및 검사권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C C		요앙모호사 치과기공사	A B				۸	Α	٨
공신성이 설치 및 우리권 전기공학 엔지니어 및 연구원				시파기하시 치료사 보조원	В	A		초 · 중 · 고등학생 전업주부	A		
선거공약 엔지니어 및 연구원 냉동 · 냉장 ·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A E D C		시묘사 모소현 문화/예술/디자인직	В	Α	В	진입주무 무직	A F	A D	B E
냉동ㆍ냉정ㆍ공소기 절지 및 정미원 제빵사 및 제과원		рс ВЕ		군와/메굴/디자인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В	С	В	무식 61세이상 남자 및 여자(직업종사자 제외)	_	_	
세히시 롯 세박전		ם ם	D	근데디어 디자이니	D	U	D	이게이의 다시 첫 어지(국립증시자 세포)		U	

1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안내

	댠군	D군	C군	B군	A군
사망보험금	2억원	6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장해보험금	2억원	5억원	10억원	12억원	15억원
입원보험금	2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6만원

- ㆍ 위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유사한 직종의 등급을 적용하며, 위 분류표에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위험도가 높은 쪽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 · 개인 및 단체상품(기업주 부담 상품은 제외)의 기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함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괴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초괴금액을 감액합니다. (단, 보험가입급액의 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는 제외) · 위험등급별로 왼쪽에 명시된 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사망 및 장해보험금은
- 사망등급, 입원보험금은 입원등급 적용)
- · 상해등급은 상해보험 보험료에 적용되며, E/D는 고위험, C/B는 중위험, A는 비위험을 의미합니다.
- ㆍ 상해보험 위험지수 적용대상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운전목적 및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포함)이 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증권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l 법인이 청약하는 경우, 세제 및 손비처리 등 관련 주요 안내사항

- · 수익자(사망수익자, 상해수익자, 만기수익자, 연금수익자 포함)가 법인이 아닌 경우 수익자가 임원(대표 포함) 또는 그 상속인인 계약에서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임원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업원 또는 그 상속인인 계약에서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손금 산입될 수 있음)
- · 피보험자가 임원인 보험을 퇴직금 용도로 활용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명의의 보험계약은 CEO의 개인 자산이 아니므로 CEO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① 임원 퇴직시 법인명의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보험계약의 평가액을 포함한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계산법에 · 손비처리 관련 내용은 각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 세무사와 확인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향후 실제 퇴직소득 수령시 당시 법률규정(과세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② 임원 퇴직시 「법인명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또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평가액」은 귀사의 손비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손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법인 명의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보험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일반/전문금융소비자 구분 확인서



상품명 New종합건강일당백(무)_2종_표준체

영수증번호 62524284620120211202



아래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과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 ·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제2조 제9호)

l 일반/전문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 일반금융소비자	*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의미하며,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 소액분쟁의 분쟁중 소제기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예)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협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보험관계단체, 보험설계사 · 대리점 및 중개사 등 보험모집종사자,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및 동일한 회사 · 사업장 ·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 적용 의사 확인	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 대우받기를 요청할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 (미체크시 전문금융소비자 유지) ※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신청이 가능한 전문금융소비자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기업성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일한 회사·사업장·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등 (보험모집종사자는 제외)

	성명		서명					
친 권 자 (후견인)	성명		서명					
		□ 다른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단독친권자임을 확인합니다.						

삼성생명 SAMSUNG 작성일자: 2021 년 12 월 02 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계약체결 종합확인서



상품명 New종합건강일당백(무)_2종_표준체

영수증번호 62524284620120211202

本 계약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모집종사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판매원칙 또한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감독규정 제23조) 및 제17조~제21조, 제28조, 제44조~제4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 ·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보험모집인의 고지의무 및 판매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관되며, 추후 본 계약관련 중요사항 고지의무 및 판매원칙 준수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해당 란에 자필로 "V" 체크 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종사자의 중요사항 고지	확 예	인 아니오				
1	모집종사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업무내용: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V					
2	모집종사자가 1사 전속 모집종사자인지,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의 모집종사자인지 확인하셨습니까?	V					
3	모집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 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 보험회사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안내 받으셨습니까? ※ 단, 보험회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V					
4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 ·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으셨습니까?	V					
5	모집종사자의 이력 · 불완전판매비율 · 계약유지율 · 과태료 처분 등 법적처분여부를 이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으셨습니까?						
6	모집종사자의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을 확인하셨습니까?	✓					
부허	상품 판매원칙 준수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사항 설명 확인		인				
		예	아니오				
7	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모집종사자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 하였습니까? ※단,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실 경우,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V					
	모집종사자가 아래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u>(아래 사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u>						
8	① 모집종사자가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 ②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③ 모집종사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 ④ 모집종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						
9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 명시된 금융소비자의 권리사항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해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였습니까?	V					
계약	서류 전달 여부에 대한 확인 * 모바일 /이메일 보험약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됩니다 * 보험증권은 보험회사의 승	낙 이후 저	공됩니다.				
	보험계약청약서 보험 약관 상품설명서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모1	집종사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급부수령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급부(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체결·	권을 부여	 받지 않은				

ᆫ	실업용사사는 모엄외사도부터 급부수당권인을	무머 믿은 경우에 안하여	H 급무(모엄됴)를 믿을 수 X	있으며, 모엄외사도무터 게	악세걸권글 무머님	받시 않는
5	L집종사자에게는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성명		서명	
계 약 자	성명	카카오 인경	서명	카카오 인증	친 권 자 (후견인)	성명		서명	
							다른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단		

작성일자: 2021 년 12월 02일



[□] **모집종사자**를 직접 만나서 상기 내용을 고지/설명 받았으며, **계약자**가 **계약서류 및 동 확인서를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